

###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선상낚시와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 안내하였을 경우 낚시객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구명조끼 착용 지시 및 통신기기 작동 이상 여부 확인 등)하고 인근해상에 대기 및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신고 입항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객을 거부하여야 한다.

### (승객의 준수사항)

- 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가 전달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승객은 『수산자원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 후 승선하여야 한다.
- ④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영업시간 외 항해요구 및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5. 선상 및 갯바위 등에서 쓰레기 투기·취사·야생 동식물 등을 반출하는 행위.
  6.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 승객은 출항 시부터 안전하게 입항할 때까지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8.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9.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